2018학년도 1학기

행정법 관계 및 행정작용법의 이해

- 행정작용법 -

용인송담대학교 법률실무과

담당 : 박 영 철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의 실효성이란 **“행정목적의 달성”**을 말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수단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임.
-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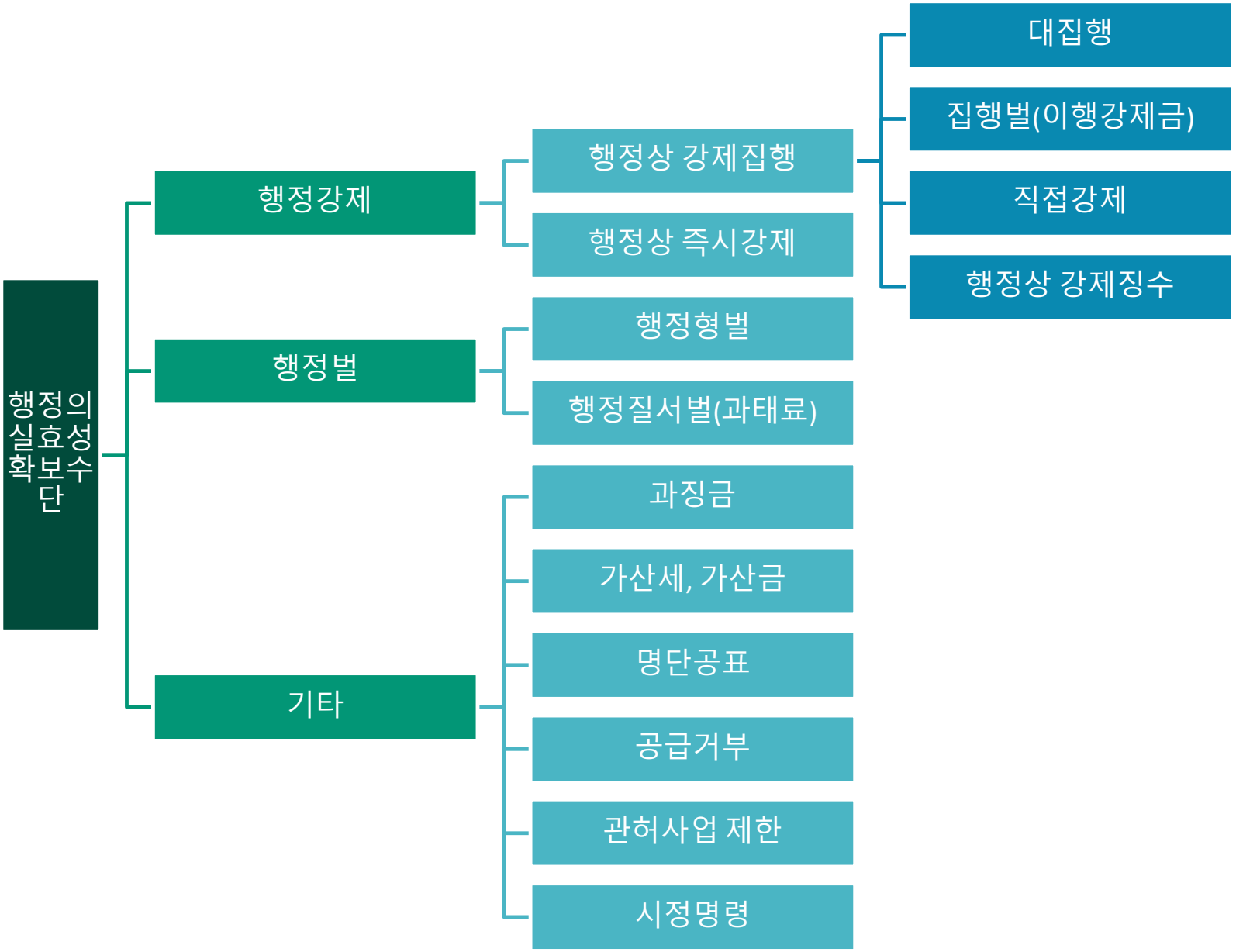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강제
행정상 강제집행
대집행
집행벌(이행강제금)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과태료)
기타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명단공표
공급거부
관허사업 제한
시정명령

행정강제 – 행정상 강제집행

- "행정강제"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하며,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로 구분**함.
-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하고,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가 있음.

- 대집행(代執行)

✓**의 의)** "대집행"이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행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함(행정대집행법 제2조).

✓**주 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당해 행정청"임. "당해 행정청"이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말함.

✓**대집행의 수탁자)** 대집행의 수탁자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인일 수 있음.

✓**대집행의 요건)**

①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대체적 작위의무"란 그 의무의 이행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작위의무를 말함(건물철거, 물건파기 등).

✓대체적 작위의무는 법령에 의해 직접 또는 법률에 따른 행정청의 명령에 부과된 경우에 대상이 됨.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는 당해 행정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됨.

✓부작위의무와 수인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님.

✓물건의 인도는 대체성이 있는 물건에 한하여 대집행이 가능함.

✓토지나 건물의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님 –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님(예)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점유이전).

②비례성

➢대집행은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허용됨.

✓대집행권의 행사는 재량에 속함(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가능규정임).

✓대집행 절차

①계고(戒告)

- "계고"란 상당한 기간 내에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한다는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행위를 말함.
- 대집행시 계고의무. 단, 긴급시 예외(행정대집행법 제3조)
- 요건

1)대집행을 계고할 때에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2)계고처분은 문서로 하여야 함.

3)계고처분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함. 상당한 기간이란 사회통념상 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말함.

4)계고시 대집행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야 함.

②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 실행 의사를 통지하는 행위.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그 지정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이 대집행 영장으로 대집행실행 시기, 대집행책임자의 성명, 대집행비용의 계산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를 말함.
- 통지의무. 단, 긴급시 예외

③대집행실행

- "대집행 실행"이란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시키는 물리력의 행사를 말함.
-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행정대집행법 제4조).

④비용징수

-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
-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짐.
-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행정대집행법 제6조).

▪ 행정구제

①항고소송

- 행정심판 제기 가능(행정대집행법 제7조).
-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납부명령 – 취소소송의 대상
- 계고, 통지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은 대집행이 실행되면 소의 이익을 상실함.
- 철거명령과 대집행 절차를 이루는 계고 등 행위는 별개의 법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철거명령의 하자가 대집행 절차의 행위에 승계되지 않음.

②국가배상 및 결과제거청구 – 위법한 대집행, 대집행의 방법, 대집행의 실행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의 계속(결과제거청구권)

③손실보상 –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의무이행을 시키는 것이므로 손실보상은 없음.

집행벌 - 이행강제금

- ✓의 의) "집행벌"이란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계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함.
- ✓대 상)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 ➢예) 건축법 제79조제1항 -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의무 중 공사중지의무, 사용금지의무, 사용제한의무는 부작위의무, 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 철거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
- ✓법적 근거) 건축법 제80조, 농지법 제65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19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 ✓부과요건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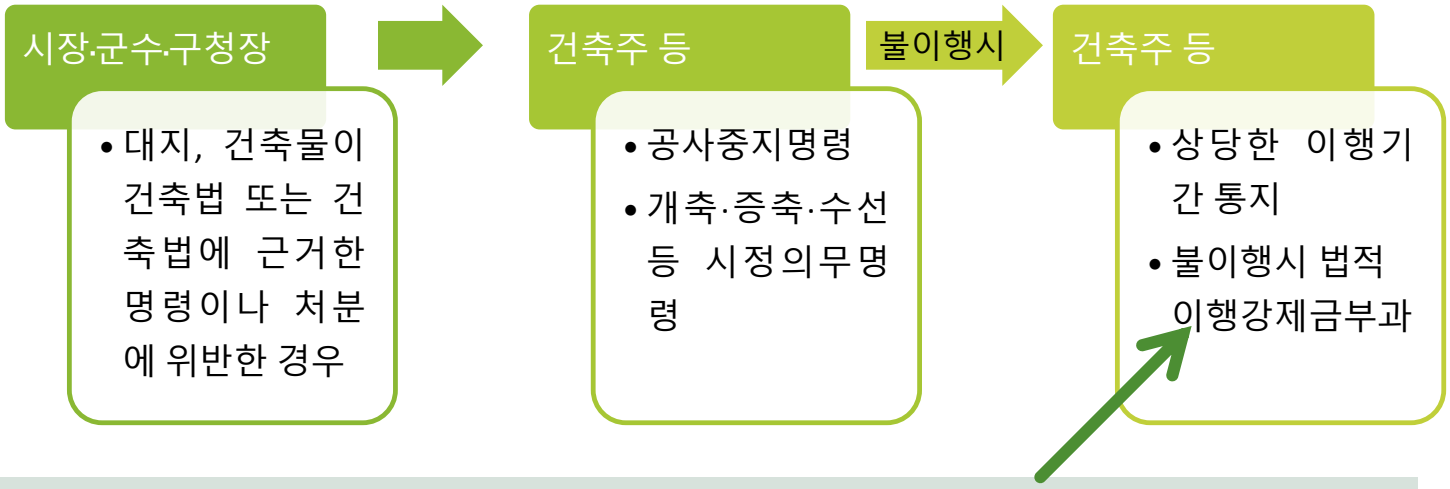

1) 이행강제금 부과 전 문서로 계고
2)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3) 이행강제금 기한 내 미납부시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급여, 금융자산 등)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충족시킴.

- ✓ 이행강제금의 불복)
  - ➢ 비송사건벌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농지법 제62조제7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건축법 제69조의2)
- ✓ 다른 실효성 확보수단과의 관계
  - ➢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헌재 2004.3.26. 2001헌바80등).
  - ➢ 이행강제금은 그 처벌 또는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헌재 2004.3.6. 2001헌바80등).

직접강제

- 직접강제

✓ 의 의) "직접강제"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 또는 양자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함.

✓ 대 상) 비대체적 의무 + 대체적 작위의무 (영업장 또는 사업장의 폐쇄(먹는 물 관리법 제38조제1항), 외국인의 강제퇴거(출입국관리법 제46조))

✓ 한 계) 최후수단으로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인권에 대한 제한이므로 엄격한 실체법적 절차법적 통제가 가하여야 함.

✓ 권리구제) 행정쟁송, 국가배상,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행정상 강제징수

- 행정상 강제징수

✓ 의 의) "강제징수"란 국민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말함.

➢ 예) 지방세법 제28조제4항, 토직취득보상법 제99조 등

✓ 절 차) 독촉 → 재산의 압류 → 압류재산의 매각(환가처분) → 청산(충당)

체납처분

➢ 독촉

① 세무서장, 시장, 군수 -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 독촉장 발부
② 세무서장 – 제2차납세의무자(청산인 등)에 대해 납부최고서 발부
③ 납부기한 –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산압류

① 지정기한 미납
②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후 세무서장이 압류
③ 대상재산은 세무공무원의 재량. 단, 최저생활의 보장, 생업유지 등을 위한 재산은 압류금지

① 수색권, 질문검사권
② 압류조서 작성 교부(지식재산권)
③ 압류재산의 처분금지
④ 조세납부, 공매중지, 부과취소 등의 경우 압류 해제

➢ 공매(압류재산 매각)

① 입찰, 경매에 의한 공개매각 – 금전으로 환가
② 공매전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완납시 공매 중지

➢ 청산
① 세무서장 - 금전을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그 밖의 채권에 배분
②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

✓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①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공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가능
② 심사청구(세무서장을 거친 후 국세청장)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 가능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상 즉시강제"란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권력적 사실행위)을 말함.

-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

1) 행정상 장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정신보건법 제26조, 제28조

①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험의 존재
② 위험의 구체성 – 구체적 위험에서 추상적 위험으로 확대(조류독감으로 인한 살처분)
③ 위험의 확실성 – 사회통념에 따른 위험발생이 확실하여야 함.

2) 급박하여 미리 의무를 명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 가지고는 목적달성이 곤란 할 것

-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1) 비례의 원칙 –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강제격리 대 강제입원), 즉시강제와 침해되는 상대방 권익 사이의 비례관계(정신질환자의 강제수용)
2) 절차법적 한계 – 인신구속, 압수, 수색의 경우에는 영장필요, 적법절차의 원칙 적용

-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① 적법한 즉시강제 - 행정상 장해발생의 책임있는 자에 대한 손실보상 부인,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손실보상 인정(특별희생)

② 위법한 즉시강제 – 행정쟁송, 국가배상, 공법상 결과제거,

③ 인신보호법 -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수용해제 여부 결정

행정벌

-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처벌을 말함.

행정형벌

- 행정형벌에 대하여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고 과벌의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됨.
- 예 외) 통고처분

✓ "통고처분"이란 행정범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의한 형벌을 과하기 전에 행정청이 형벌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인 범칙금을 과하고 행정범을 범한 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형벌을 과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함. 예)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사범, 교통사범 등

✓ 제도적 의의) 형벌의 비범죄화, 검찰 및 법원의 업무 경감 등

✓ 과벌절차) 통고처분에 의해 부과된 금액 납부로 과벌절차 종료. 기한 내 미납시 고발에 따른 형사소송절차 진행

✓ 불복절차) 이의가 있는 경우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족함. 즉결심판 등 형사소송절차 진행

행정질서벌

- 행정질서벌이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과해지는 행정벌을 말함.
- 행정질서벌은 행정목적의 간접적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해진다는 점에서 행정목적의 직접침해에 대하여 과해지는 행정형벌과는 구별.
- 행정질서벌은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음.
- 행정질서벌의 부과)

✓ 부과권자) 개별법률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 비송사건벌차법에 따라 법원이 정함.

✓ 부과근거)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제5조). 지방자치법 제27조, 재41조제5항

✓ 부과요건)

① 고의·과실의 필요성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② 행위시법주의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름.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③위법성의 착오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④책임연령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함.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감면하지 아니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제10조).

⑤자기책임의 예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⑥제척기간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그렇지만, 행정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⑦부과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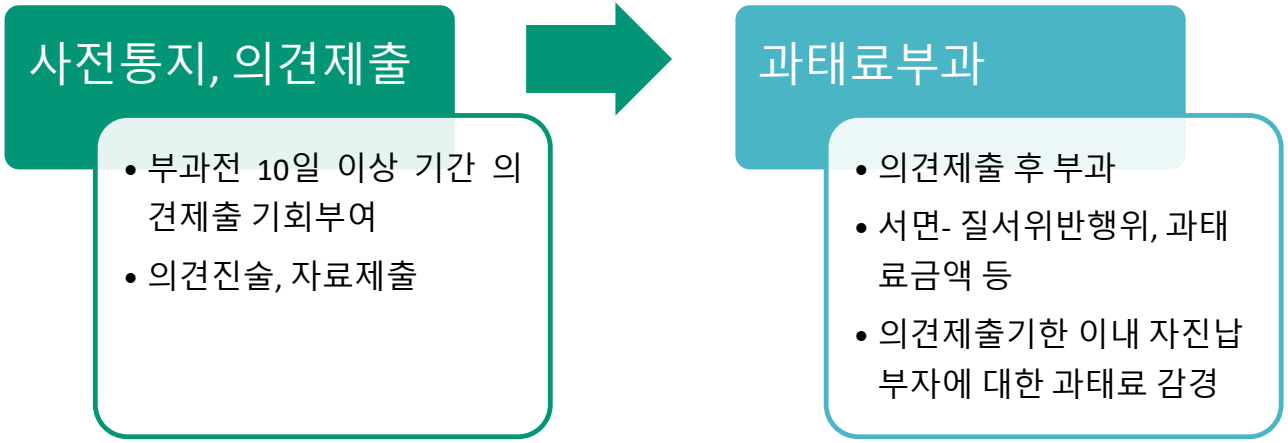

⑧부과대상자 – 질서위반행위자, 2인 이상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봄.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⑨수 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함.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⑩과태료 산정 – 행정청 및 법원은 다음을 고려함.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⑪과태료 시효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 행정질서벌의 구제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 행정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법 제19조제2항).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과태료 징수

①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함. 체납된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②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한 경우 -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고,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 과태료 집행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

③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 자진납부시 과태료 감경,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고액, 상습체납자의 신용정보제공,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할 수 있음.

- 과태료의 귀속

✓ 행정청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는 당해 행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는 국가에 귀속.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재판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제21항).

그 밖의 실효성 확보수단

- 과징금, 명단공표, 가산세, 가산금, 공급거부,관허사업의 제한, 시정명령
- 국외여행제한(출입국관리법 제4조), 취업제한(병역법 제76조), 행정법규위반행위신고포상금제 등

과징금

- "과징금"이란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행정기관이 과하는 행정상의 제재금이라 함.

✓ 예)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변형된 과징금"이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말함.

✓ 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과징금은 행정상의 제재금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벌금이나 범칙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4. 6. 30. 92헌바38).

가산세· 가산금

- "가산세"란 세법상의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세금을 말함(국세기본법 제2조제4호).
- "가산금"(加算金)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告知稅額)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국세기본법 제2조제5호).

✓ 가산금과 중가산금

➢ "가산금"이란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지방세기본법 제59조).

- "중가산금"이란 집행벌(이행강제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함(지방세기본법 제60조).

명단공표

- "명단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에 침해를 가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간접강제수단을 말함.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이하 이 조에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라 한다)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등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자(이하 "조세포탈범"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 ✓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2조).

- 법적 구제
- ✓ 항고쟁송
- ✓ 실효성있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가구제(假救濟) 인정
- ✓ 공법상결과제거청구
- ✓ 국가배상

공급거부

- "공급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서비스 또는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함(단전, 단수 등).
-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함.

관허사업제한

-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의 준수 또는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을 말함.
-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②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주무관청에 대하여 그 요구를 한 후 당해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관허사업제한의 한계

1) 비례의 원칙 - 위반시 위법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관허사업의 제한조치는 의무불이행 또는 의무위반과 관련되어여 함.

- 권리구제

1) 인허가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 등
2) 인허가의 철회 – 취소심판, 취소소송

시정명령

- "시정명령"이란 행정법규 위반에 의해 초래된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명하는 행정행위임.
- 시정의무 불이행시 행정강제(대집행, 강제집행, 직접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시정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벌이 부과됨.
- 시정명령의 대상) 과거의 위반행위로 야기되어 현재에도 존재하는 위법상태임.
- 적용법령) 행위시법(장래에 향하는 적극적 행정행위)
- 상대방)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자
- 내용, 한계) 시정명령은 명확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이행가능한 것이어야 함.

행정절차

- "행정절차"란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거치는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등 사전절차를 말함.

➢ "행정청"이란 ①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②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을 말함.

➢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함.

➢ "당사자 등"이란 ①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②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 총 칙(공통사항)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법 제4조)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함.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됨.

▪ 투명성의 원칙 및 법령해석요구권(법 제5조)

✓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행정청의 관할(법 제6조)

①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 또는 관할변경된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②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함.

- 행정청간의 협조의무 -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함(법 제7조).
- 행정청의 행정응원의무 (법제8조)

①행정응원(行政應援) 요청사유

1.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인원 · 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②행정응원거부사유

1.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2.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하고, 행정응원거부시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함.

④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음.

⑤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함.

〈 행정응원 요청 및 지원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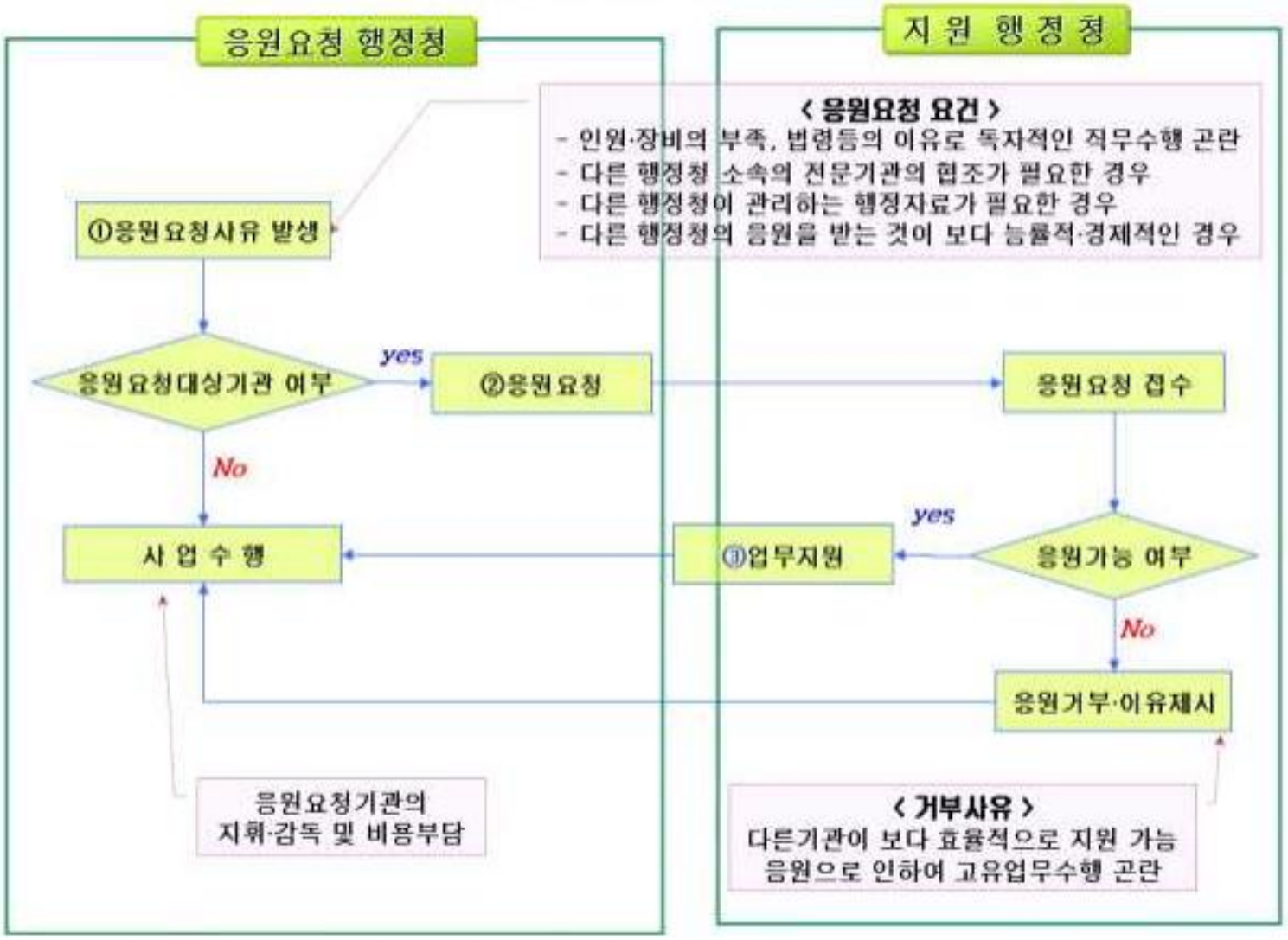

입법예고절차

-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함.
  - ✓ 예외)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 ·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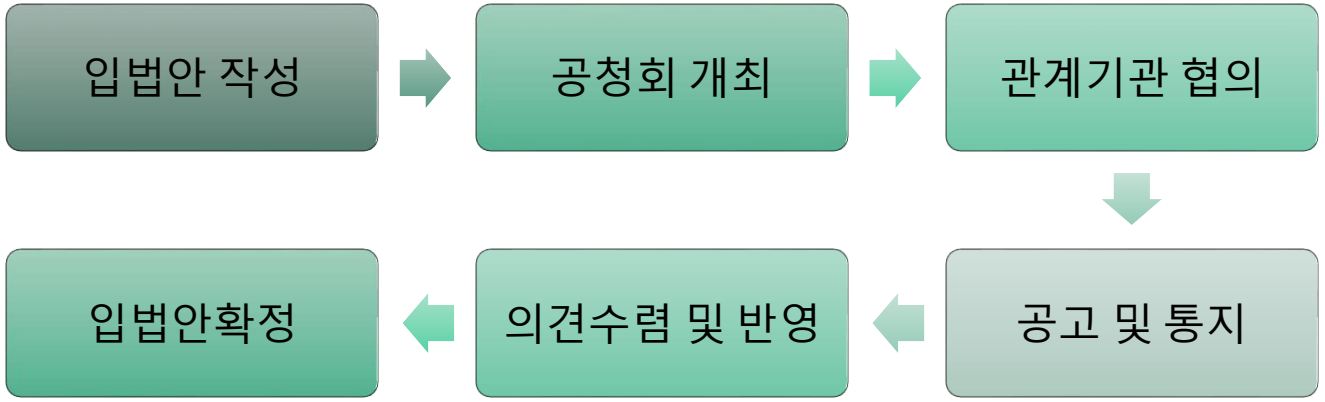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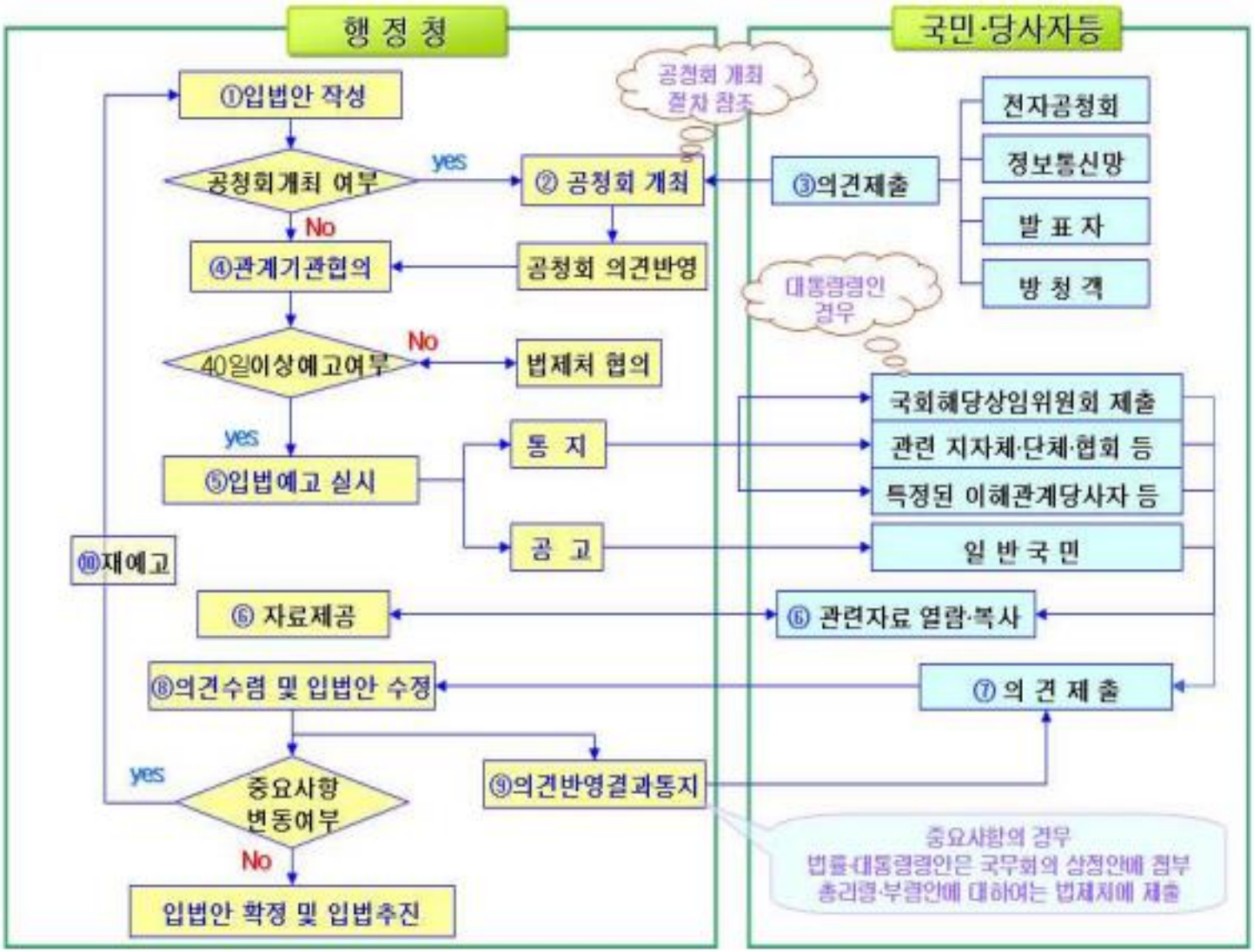

※ ④관계기관 협의(10일)와 ⑤입법예고(40일)는 동시에 실시 가능

입법예고 절차의 구체적 내용

입법안작성	• 법령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입법계획에 따라 법령의 제정안, 개정안 또는 폐지안의 작성
공청회개최	• 입법안에 처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경우 반드시 공청회 개최(법 제22조) • 기타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제출 (공청회개최시)	•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발표자 신청 또는 방청객의 자격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자공청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관계기관 협의	• 입법안을 작성한 경우 관련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 의견제출 기간은 10일 이상 부여하여 의견수렴(법제업무규정 제11조)
입법예고실시 (공고 및 통지)	• 관보.공보나, 신문.인터넷.방송.관련기관.단체의 간행물 등에 공고 이해관계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신청에 의한 예고사항의 통지 •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국회법 제98조의2) ✓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함.
자료의 제공	• 법령안의 전문 등 관련자료의 복사.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제공

예고안 등 관련자료 열람·복사	• 입법예고안의 공고 또는 통지를 수령한 국민은 누구든지 입법예고안의 전문 또는 관련 문서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요청 가능(법 제42조) •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수수료와 우송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준용
의견제출	•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법 제44조) • 의견의 제출은 예고안에 명시된 방법과 기관 및 기간 내에 제출
의견수렴 및 반영	• 예고기간은 40일 이상(자치법규는 20일 이상) 설정하여 의견제출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 • 이해관계인.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법 제43조)
의견처리결과통지	•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의견제출자에게 반드시 통지
입법안의 재예고	• 의견반영결과 입법안의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 •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함(법제업무규정 제14조)

입법예고 절차 참고사항

입법예고의무자	• 법령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안을 마련한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함. • 소속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장의 승인을 얻어 입법예고 실시(법제업무규정 제14조)
법제처장에 의한 법령안 반려	•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법예고 등을 거치지 아니한 법령안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한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법제업무규정 제21조)
법령안의 재입법예고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하여야 함(법제업무규정 제14조)
공청회개최시기	• 공청회의 개최 시기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가급적 법령(안)의 입안단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

행정예고 절차

- 행정청은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함.

✓예외)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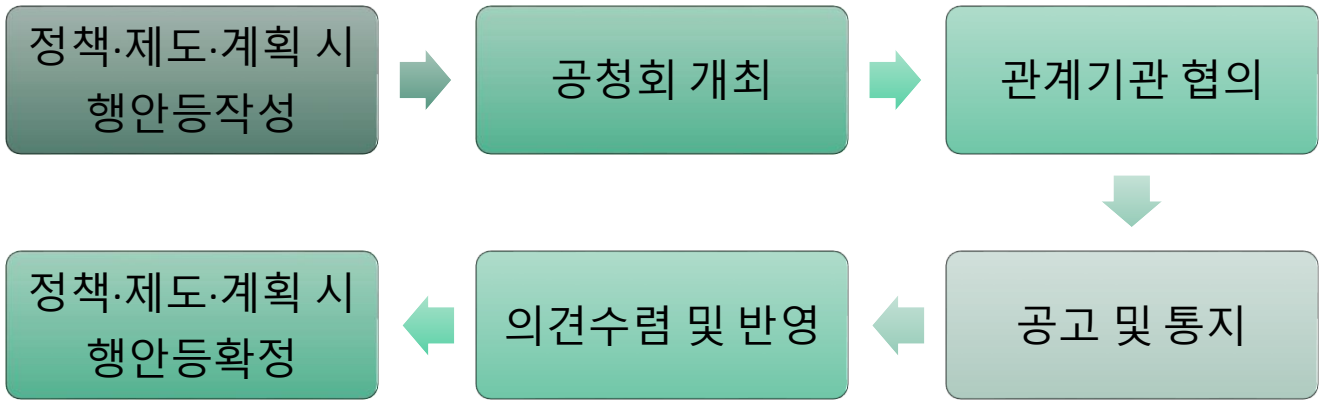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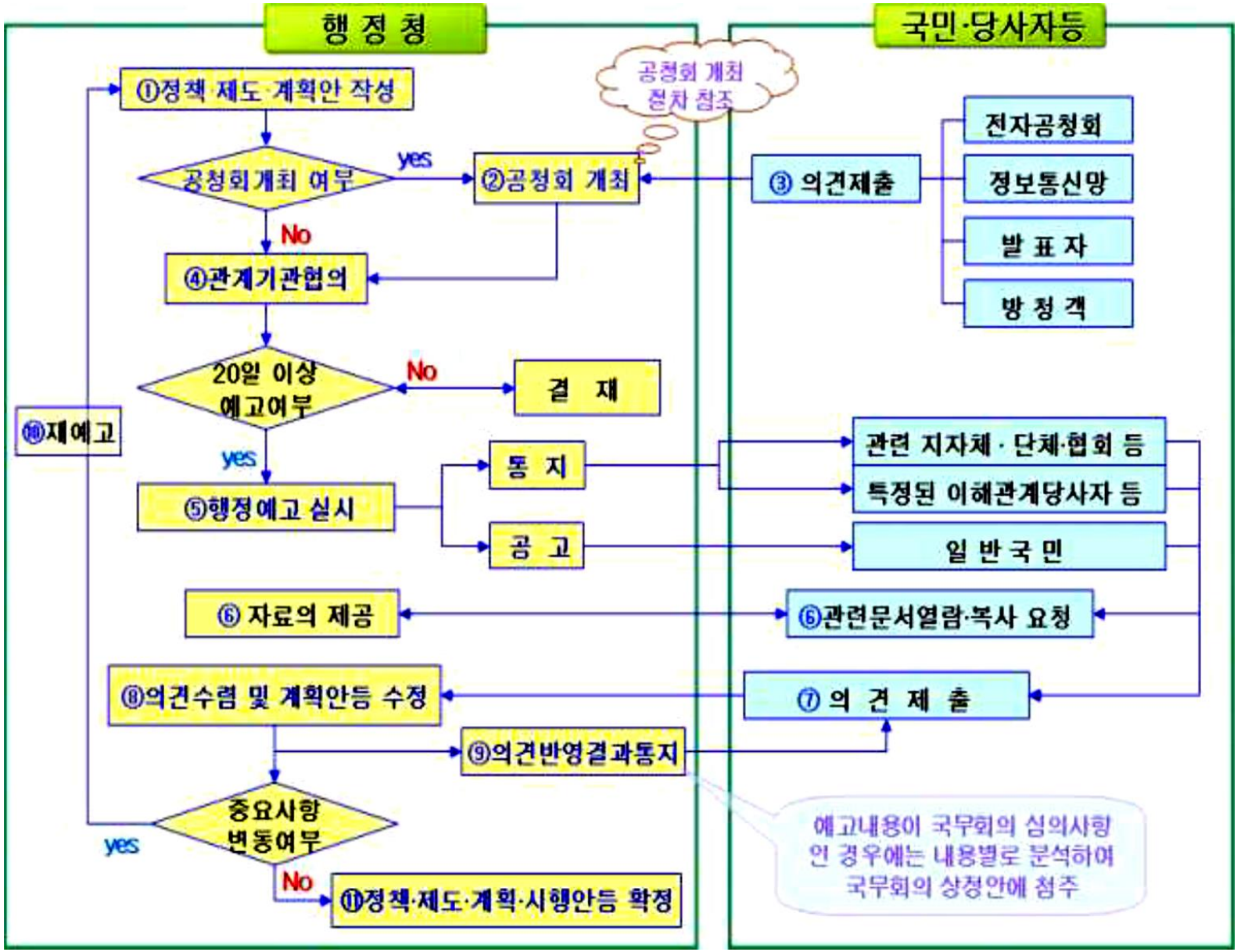
행 정 청
국민·당사자등
①정책 제도 계획안 작성
공청회 개최 절차 참조
공청회 개최 여부
yes
②공청회 개최
No
④관계기관협의
20일 이상 예고여부
No
결 재
yes
⑤행정예고 실시
통 지
공 고
⑩재예고
③ 의견제출
전자공청회
정보통신망
발 표 자
방 청 객
관련 지자체 · 단체·협회 등
특정된 이해관계당사자 등
일 반 국 민
⑥ 자료의 제공
⑥관련문서열람·복사 요청
⑧의견수렴 및 계획안등 수정
⑦ 의 견 제 출
⑨의견반영결과통지
중요사항 변동여부
yes
No
⑪정책·제도·계획·시행안등 확정
예고내용이 국무회의 심의사항 인 경우에는 내용별로 분석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주

행정예고 절차의 구체적 내용

정책·제도·계획 및 시행(안)의 작성	• 정책. 제도. 계획안 또는 시행안의 입안
공청회 개최	• 법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경우 및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 •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광범위한 처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사전 의견청취 절차로써 공청회를 개최(법 제22조)(의무적 개최) • 기타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법 제22조) (임의적 개최)
공청회 의견제출	•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발표자의 자격(신청) 또는 방청객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자공청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관계기관 협의	• 정책. 제도. 계획(안) 등이 다른 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영 제24의2)
행정예고 실시	• 관보.공보에 게시하고, 신문.인터넷.방송 등에 공고(법 제47조) •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관련단체와 이해관계자에게 예고사항을 통지 ✓ 전년도 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매년 3월 중 : 총 예고건수, 예고대상별. 매체별. 기간별 건수 등)

자료의 제공	• 행정예고안에 관한 관련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공(법 제47조)
열람·복사 요청	• 행정예고안의 공고 또는 통지를 수령한 국민은 누구든지 예고된 정책·제도·계획안의 전문 또는 관련 문서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요청 가능 ✓ 열람, 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수수료와 우송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준용
행정예고 과정의 의견제출	• 누구든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예고안에 명시된 방법 및 기관, 기간에 제출할 수 있음
의견수렴 및 계획안 등 수정	•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반영(법 제47조) • 의견을 제출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설정(법 제46조)
의견처리 결과 통지	• 제출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함(영 제24의4)
중요행정예고내용의변경에따른 재행정예고	• 제출의견의 반영결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함(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준용)

행정예고절차 참고사항

공청회 개최 시기	• 공청회의 개최 시기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가급적 법령(안)의 입안단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
적극적 의견 수렴	• 국민간 또는 특정단체간의 갈등이 우려되는 사항, 행정규제를 포함한 사항, 의약품.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 관련이나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와 관련된 고시. 훈령. 예규 등의 수립. 시행 또는 변경 시 예고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함 (행정제도절차 운영지침 제7조)
국민의 의견 제출 방법	•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발표자, 방청인의 자격으로 의견제출 가능 • 행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공고시 행정청이 정하는 방법 및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인터넷, 전화, 모사전송 등)의 활용 등

공청회

-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함(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

- 인정범위(제22조)

①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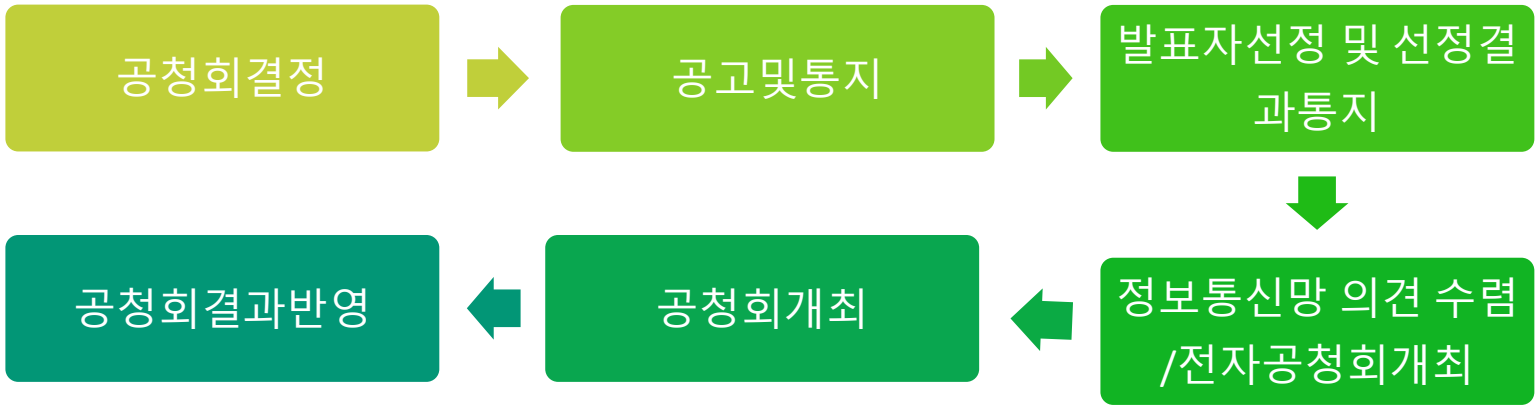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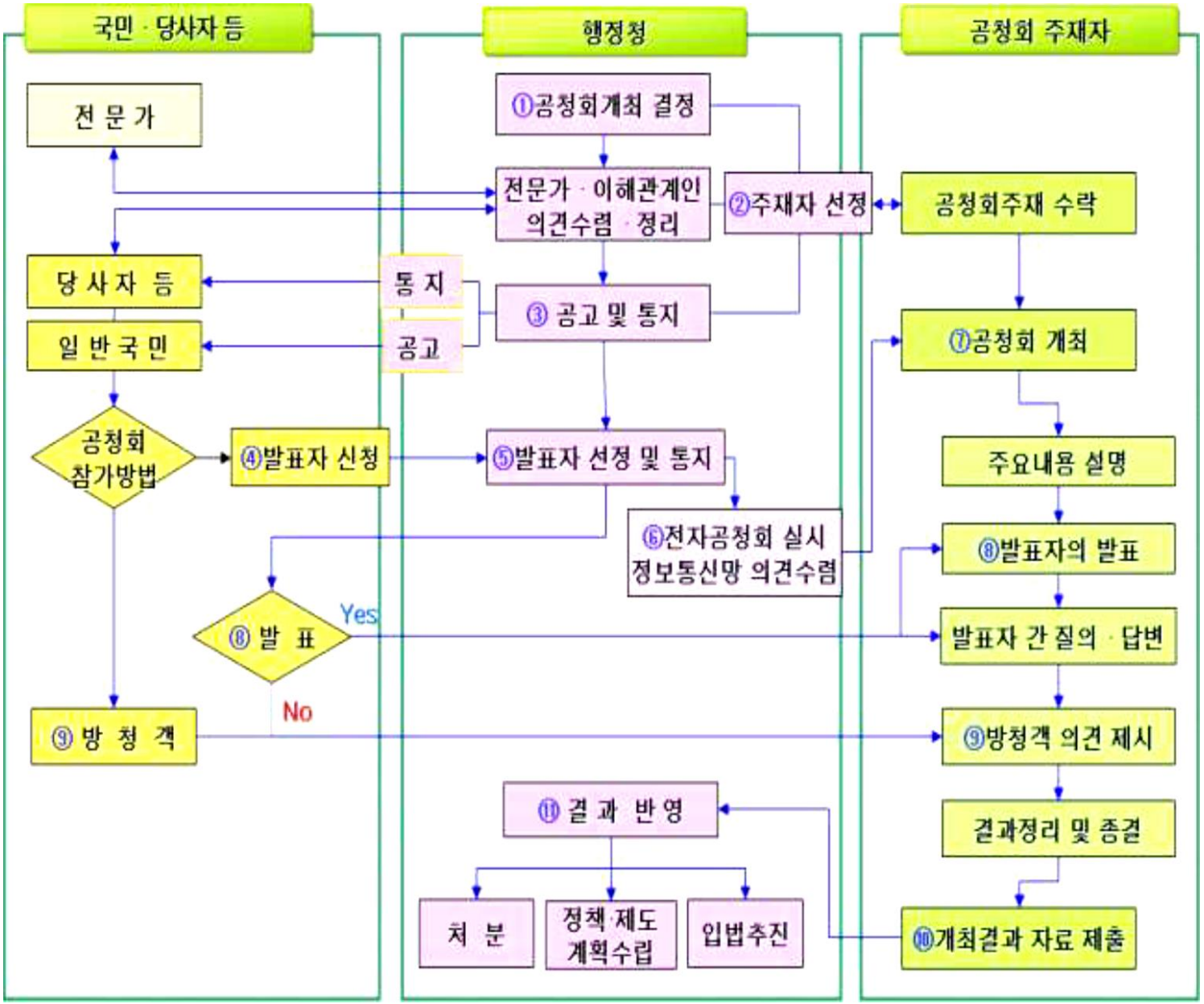
국민 · 당사자 등
행정청
공청회 주재자
전 문 가
①공청회개최 결정
전문가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정리
②주재자 선정
공청회주재 수락
당 사 자 등
통 지
③ 공고 및 통지
⑦공청회 개최
일 반 국 민
공고
공청회 참가방법
④발표자 신청
⑤발표자 선정 및 통지
주요내용 설명
⑥전자공청회 실시 정보통신망 의견수렴
⑧발표자의 발표
⑧ 발 표
Yes
발표자 간 질의 · 답변
No
⑨ 방 청 객
⑨방청객 의견 제시
⑪ 결 과 반 영
결과정리 및 종결
처 분
정책·제도 계획수립
입법추진
⑩개최결과 자료 제출

공청회 절차 구체적 내용

공청회개최 결정	•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 기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등
주재자선정 (지명 또는 위촉)	• 당해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또는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 ✓ 이전의 "당해 공청회의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이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정성 제고
공청회계획의 공고 및 통지	•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 및 일반국민 대상 공고 • 공고매체는 관보·공보·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별지 제21호서식]
공청회 발표 신청	• 발표를 원하는 자는 공청회 사안에 대하여 찬반의견 등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당해 행정청에 공청회 발표참가 신청(법 제38의3)
발표자 선정	• 공청회 계획 공고 후 발표신청자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법 제38의3) • 발표신청자가 없거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관련분야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 경험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 • 발표자선정 결과 통지 발표자 선정 결과를 발표신청자 모두에게 통지(영 제21조)

전자공청회 개최	•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전자공청회 실시(법 제38조의2) • 전자공청회 개최 전까지 제목, 주요내용, 인터넷주소 등을 당사자등 • 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
공청회 개최	• 행정청으로부터 지명 또는 위촉받은 주재자는 공청회의 개회부터 종료시까지 전과정을 주재(법 제39조) 1) 주요내용 설명 •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개회하고 당해 공청회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진행순서의 설명과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발표자의 발표 및 발표자간 질의. 답변 • 공청회 시간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발표자별 발표시간, 발표순서를 정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발표가 끝난 후에 발표자간의 질의 및 답변 시간 부여 3) 방청객 의견제시 • 방청객에게도 충분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방청객 의견제시 시간 부여
발표자의 발표	• 공청회주재자의 회의진행에 따라 의견을 발표 •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법 제39조)
방청객 의견제시	• 공청회주재자의 진행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의견제시 가능(법 제39조)
공청회 결과의 행정청 제출	• 공청회를 종료하면 제시된 의견 등 결과를 정리하여 행정청에 제출
공청회 개최 결과반영	• 공청회.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분, 입법안, 행정예고안 등에 반영(법 제39의2)

처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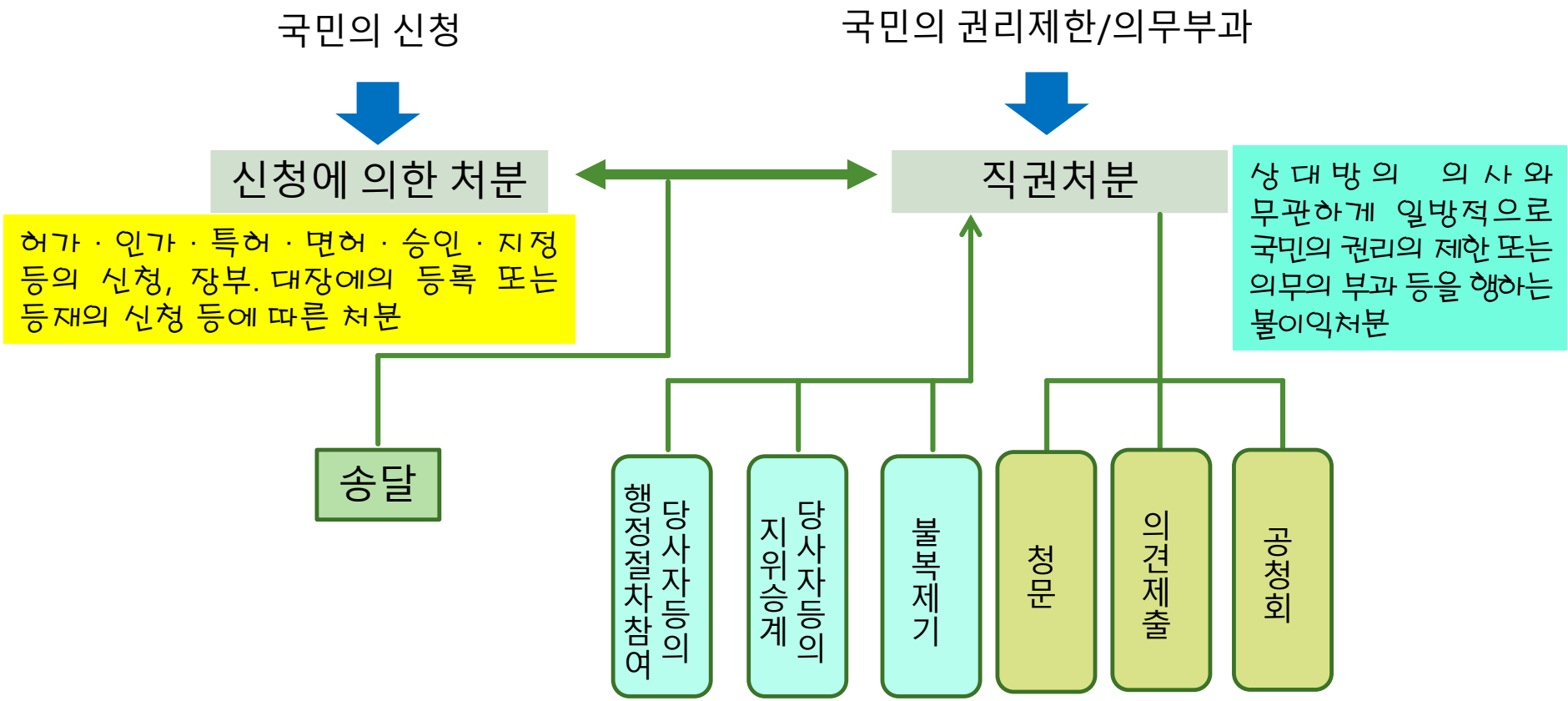
국민의 신청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신청에 의한 처분
직권처분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승인 · 지정 등의 신청, 장부. 대장에의 등록 또는 등재의 신청 등에 따른 처분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 등을 행하는 불이익처분
송달
당사자등의 행정절차참여
당사자등의 지위승계
불복제기
청문
의견제출
공청회

행정작용의 처분성 여부 판단

공법상 계약, 합동행위 등	당사자 대응한 지위	X
행정입법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님 ✓ 법정립행위가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 발생은 행정입법 절차로 다툼.	X
일반처분, 고시, 공고	불특정 다수인 대상(도로통행금지, 입산금지 등)	◯
	통지행위	X
행정계획	예외) 구속적 행정계획에 한하여 인정	X
알선·권고·경고·통지·질의회신	다만, 단순경고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지만, 차수적용을 받는 1차 경고는 처분성을 가짐.	X
권력적 사실행위	강제집행, 즉시강제 등	◯
공권력 행사의 거부	외관상 일정한 행위 존재	◯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공권력행사작용이나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 개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	◯

처분절차 – 신청에 의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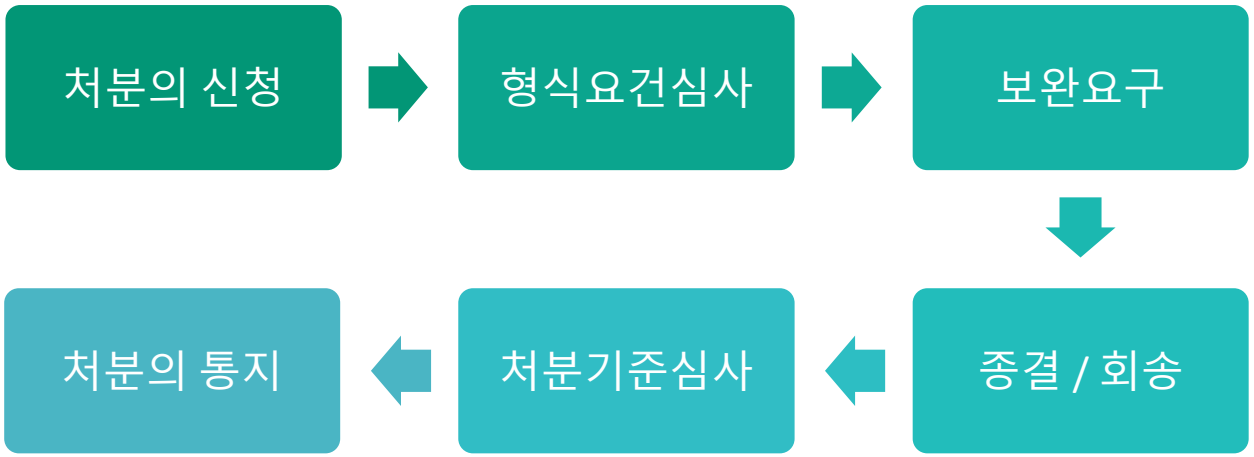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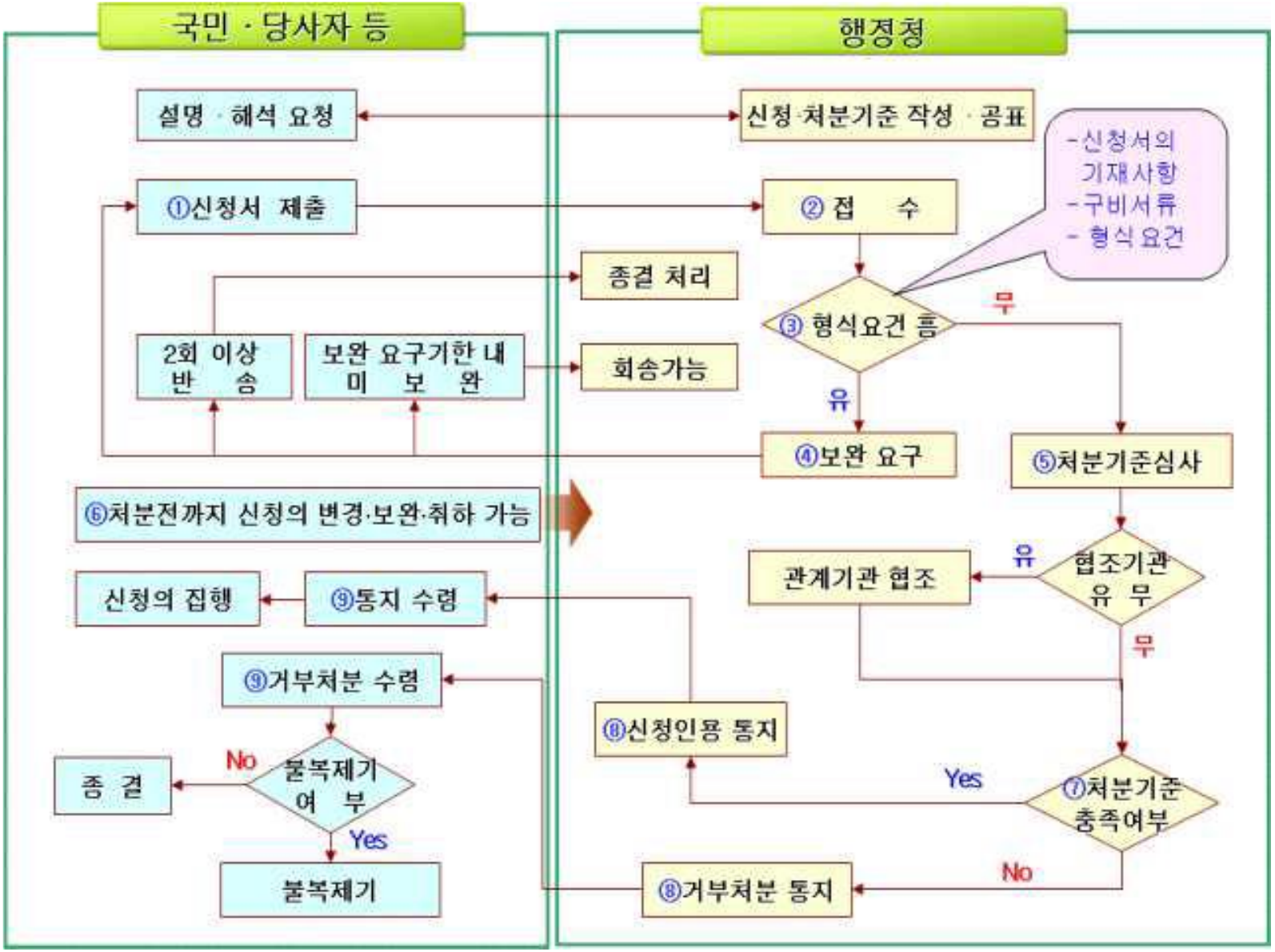
국민 · 당사자 등
행정청
설명 · 해석 요청
신청·처분기준 작성 · 공표
①신청서 제출
② 접 수
-신청서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 형식요건
종결 처리
③ 형식요건 흠
무
2회 이상 반 송
보완 요구기한 내 미 보 완
회송가능
유
④보완 요구
⑤처분기준심사
⑥처분전까지 신청의 변경·보완·취하 가능
유
협조기관 유 무
관계기관 협조
신청의 집행
⑨통지 수령
무
⑨거부처분 수령
⑧신청인용 통지
No
종 결
불복제기 여 부
Yes
Yes
⑦처분기준 충족여부
No
불복제기
⑧거부처분 통지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의 구체적 내용

신청서의 제출	• 당사자등은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청에 인.허가, 등록 등 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17조 제1항) • 신청 방법 - 문서주의 원칙, 방문, 구술. 전화. 민원우편, 정보통신망 이용, 다른 행정기관 신청 등(법 제17조 제1항)
신청의 접수	• 민원인으로부터 인. 허가 등의 처분의 신청을 접수한 행정청은 접수증을 교부(영 제9조)하고 신속한 처리
신청서의 형식, 요건심사	• 신청서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당해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 등 형식적 요건만 심사(실체적 내용의 심사. 보완요구는 불필요)
보완요구	• 신청서에 기재사항 누락,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법 제17조 제5항) 1) 재보완요구 ✓ 보완요구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7일의 기간을 주어 다시 보완요구 가능(민원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2) 기한내 미보완 → 회송 가능 ✓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음(회송 가능)(법 제17조)

보완요구	3) 2회 이상 반송 → 종결처리 가능 ✓ 행정청은 신청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2회에 걸쳐 반송되어 온 경우,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 종결처리 가능(영 제10조)
처분기준에 의한 심사	• 신청에 대한 처분결정시 적용되는 허용. 거부 등의 실체적인 내용의 처분기준을 심사 ▪ 다수기관 관련 신청의 관계기관 협조 ✓ 다수기관이 관련된 신청의 경우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협조요청 ✓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협조요구 기간 내 내용의 심사 등 협조 이행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 요청
보완·변경·취하	• 행정청으로부터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정한 기간내에 보완처분이 있기까지는 신청의 내용을 보완. 변경. 취하 할 수 있음
처분통지	• 신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경우 인용. 거부 등의 의사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신청인에게 도달된 때 효력발생) • 거부처분시 근거와 이유제시 및 고지 이행 ✓ 처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의 통지에 준하여 근거와 이유제시 및 불복방법 등의 고지
처분서 통지	• 신청인용 통지 : 신청의 집행 • 거부처분 :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불복제기 가능

처분절차 - 직권처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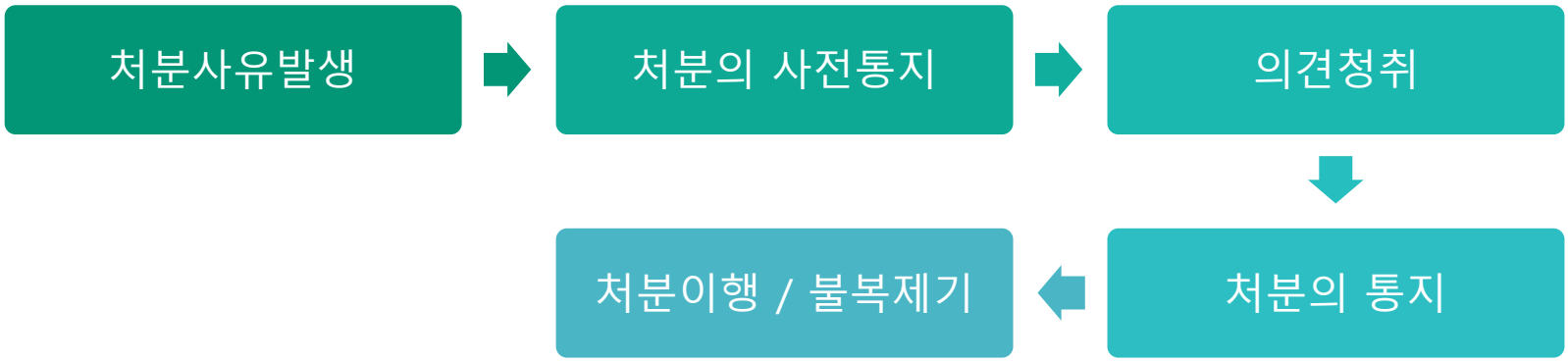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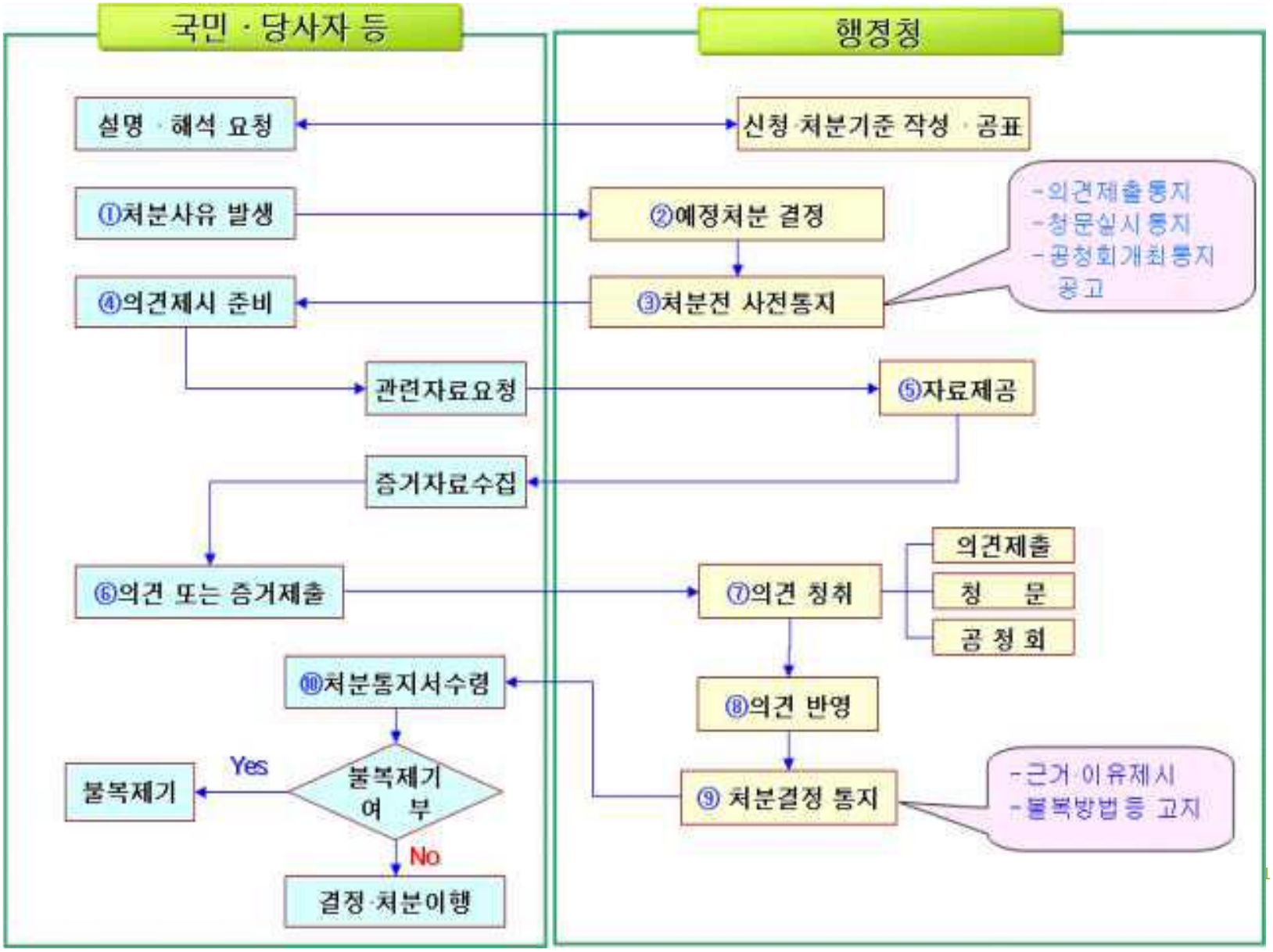
국민 · 당사자 등
행정청
설명 · 해석 요청
신청 처분기준 작성 · 공표
①처분사유 발생
②예정처분 결정
-의견제출통지
-청문실시통지
-공청회개최통지
공고
④의견제시 준비
③처분전 사전통지
관련자료요청
⑤자료제공
증거자료수집
⑥의견 또는 증거제출
⑦의견 청취
의견제출
청 문
공 청 회
⑩처분통지서수령
⑧의견 반영
불복제기
Yes
불복제기 여 부
⑨ 처분결정 통지
-근거 이유제시
-불복방법등 고지
No
결정 처분이행

직권처분절차의 구체적 내용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행정청에 해석, 설명 요청 • 처분기준의 해석, 설명에 대한 신뢰보호
처분사유의 발생	• 법규 위반 등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 행정청 또는 관련기관에 의한 적발 등
예정처분 결정	• 법규 등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예정처분을 결정하고 적정한 처분전 의견청취 방법을 결정
처분 사전통지	• 당사자등에게 불이익 처분전에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구체적 내용 및 법적근거 등을 의견청취 방법별로 미리 통지(법 제21조) • 통지방법 ✓ 처분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 별지 제8호 서식 ✓ 처분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 별지 제9호 서식 ✓ 공청회개최통지서(공고 및 통지) - 별지 제21호 서식
의견제시준비	• 법규 위반 등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당사자등은 처분에 대한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준비 • 관련자료 등의 요구 ✓ 당사자등은 청문통지가 있은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사안의 조사결과 등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음

자료 등의 제공	• 당사자등으로부터 처분과 관련된 문서 등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열람·복사의 제공의무
의견 또는 증거의 제출	• 예정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등은 청문출석, 공청회참가, 의견제출 등을 통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 등을 제시 1) 의견제출 ✓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서면, 정보통신망 또는 구술로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를 행정청에 제출 2) 청문출석 ✓ 청문실시 통지서를 받은 당사자등은 청문에 출석하여 유리한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고 청문을 포기(포기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으며 청문종료시까지 의견의 제출가능(청문에 참석하여진술한 것으로 간주) 3) 공청회참가 ✓ 공청회 공고 또는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은 공청회발표를 신청하여 발표자의 자격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방청객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의견제출가능
의견청취	• 예정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등으로부터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을 통한 의견청취실시
의견의 반영	•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의 의견청취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처분 결정
처분결정통지	• 처분의 통지는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 불복제기의 방법. 기간. 기관 등을 반드시 고지
처분통지수령	• 처분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은 처분의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고지한 방법 및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불복제기 가능

- 신속처분의 원칙
- 처분의 방식(문서주의, 법 제24조제1항)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함.
  -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예외)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함.
  -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를 적어야 함.
- 처분의 근거와 이유의 제시

  예외)①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②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 ③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처분의 정정(법 제25조)
  -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사항의 공지(법 제26조)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함.

의견청취절차

구분 \ 종류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개 념	•국민의 권익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앞서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일반 · 간이절차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특별 · 정식절차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특별절차
실시요건	•불이익처분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등 처분시 의견제출기한내 당사자등 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는경우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절차	•의견제출기회의 제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 ✓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기간 고려	•처분사유, 처분내용 및 청문일시 등을 통보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청문개최 10일 전 까지 사전통지	•미리 공청회에 관한 사항(목적, 일시, 참석자 등)을 널리 홍보 •공청회개최 통지서 ✓공청회개최 14일 전까지 통지. 공고

구분 \ 종류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실시절차	•의견제출방법 - 서면, 구술(출석), 정보통신망(팩스, 전화, e-mail 등)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청문실시 •청문일 출석진술(의견서로 대체 가능)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의견서 작성후행정청제출	•공청회 발표자 신청 및 공정한 선정 •공청회 주재자의 주재 •각계로부터 추천·신청 받은 발표자의 발표, 질의답변, 방청인의 의견제시
	•처리방법 -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	•처리방법 -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 처분	•처리방법 -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시 이를 반영하여 처분
적용사례	•비교적 경미한 처분 •영업정지, 면허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비교적 중대한 처분 •인. 허가, 면허 등의 취소 및 철회, 제조. 판매금지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 조합 등의 설립취소, 해산명령, 철거·폐쇄명령	•처분대상 불특정 다수 •주요법령의 제. 개정 •국민에게 중대한 정책·제도의 도입 •특정 구성원간의 대립된 이해관계 조정

신고절차

- "신고"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고하는 행위를 말함.
-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신고가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봄.
- 행정청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 행정청은 신고인이 신고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함.

신고의 효과에 따른 구분

자기완결적 신고

- 신고가 자기완결적 행위가 되는 경우라 함은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그저 통보함으로써 최종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
- 신고제도는 이와 같이 자기완결적 행위가 됨에 그 본래적 의의가 있음

행위요건적 신고

- 신고가 행정요건적 행위가 되는 경우라 함은 신고로 인하여 최종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행정주체의 어떤 공법행위가 행하여지는 동기 또는 요인이 되는데 그 치고 그 자체로서 법률효과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함
- 이 경우에는 법령에 행정청에게 신고의 수리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신고에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신고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신고수리의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경우가 해당됨
- 신고가 행정요건적 행위가 되는 경우는 행정청의 신고수리처분이 갖는 법적 성격에 따라 사인의 신고행위는 허가 또는 인가의 신청에 갈음하는 신고행위, 행정청의 신고수리는 허가 또는 인가행위의 법적 성격을 띠게 됨.
- 신고가 행정요건적 행위가 되는 경우의 예는 매우 다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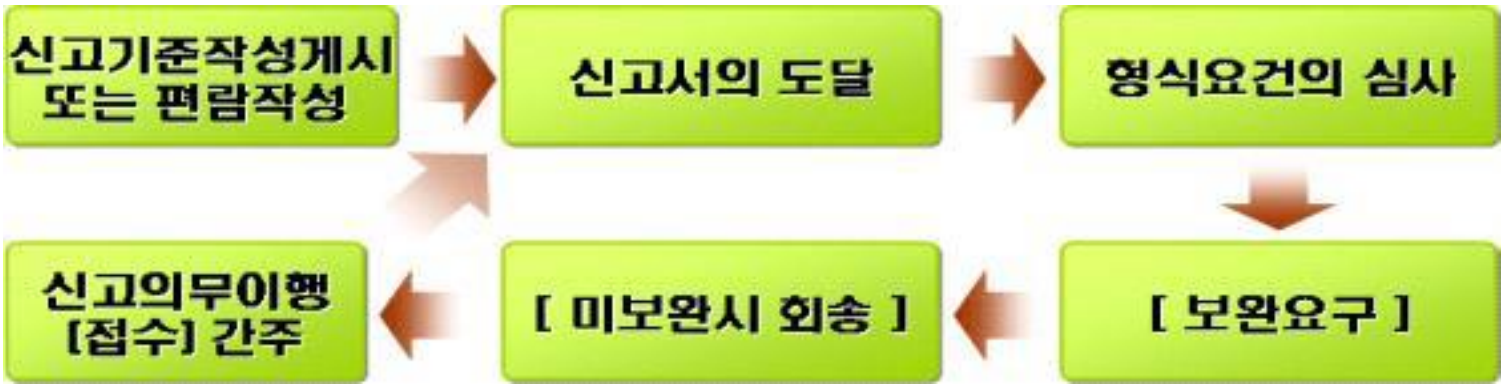
신고기준작성게시
또는 편람작성
신고서의 도달
형식요건의 심사
[보완요구]
[미보완시 회송]
신고의무이행
[접수] 간주

〈 신고의 처리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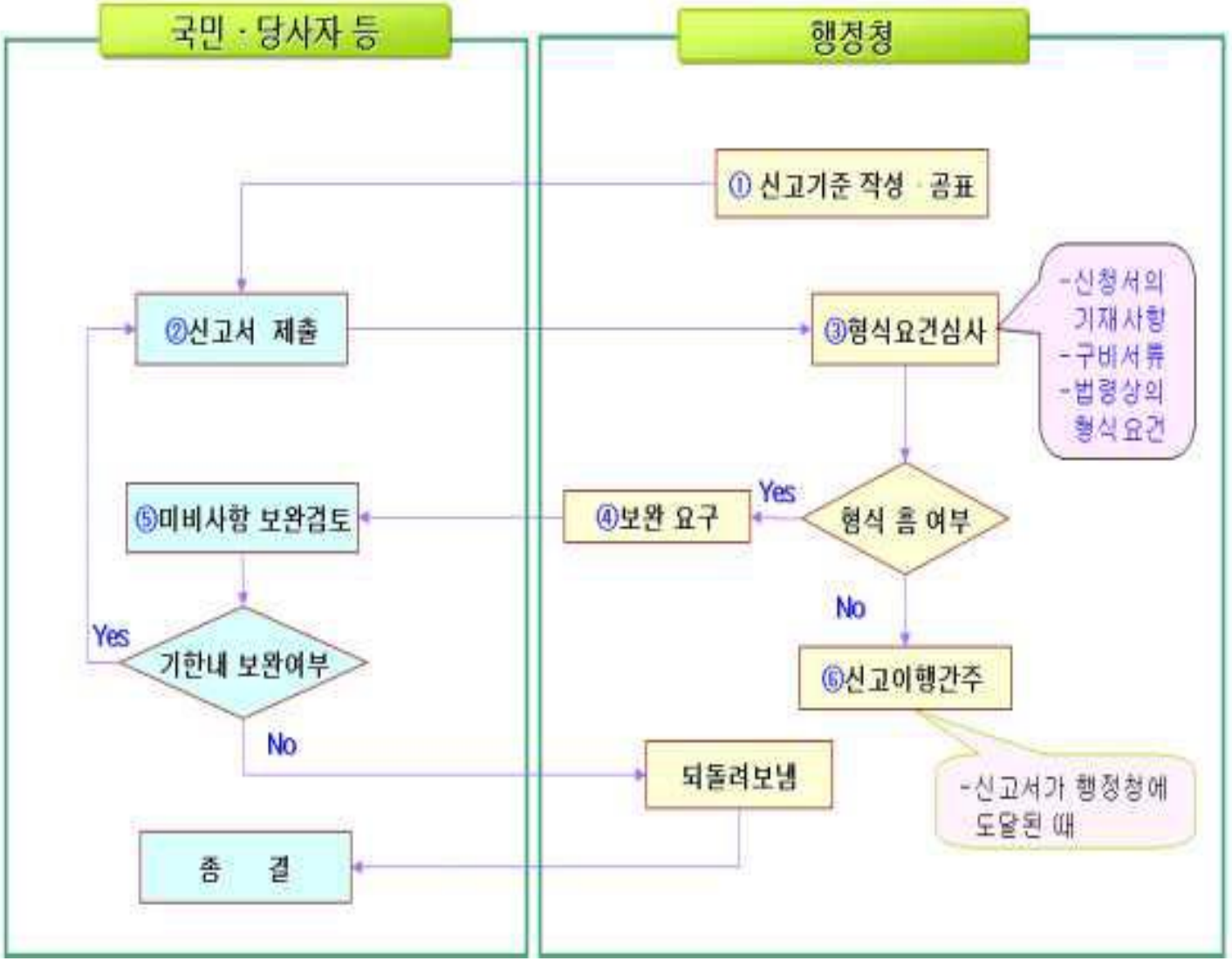
국민 · 당사자 등
행정청
① 신고기준 작성 · 공표
②신고서 제출
③형식요건심사
-신청서의 기재사항
-구비서류
-법령상의 형식요건
⑤미비사항 보완검토
④보완 요구
Yes
형식 흠 여부
Yes
기한내 보완여부
No
⑥신고이행간주
No
되돌려보냄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
종 결

행정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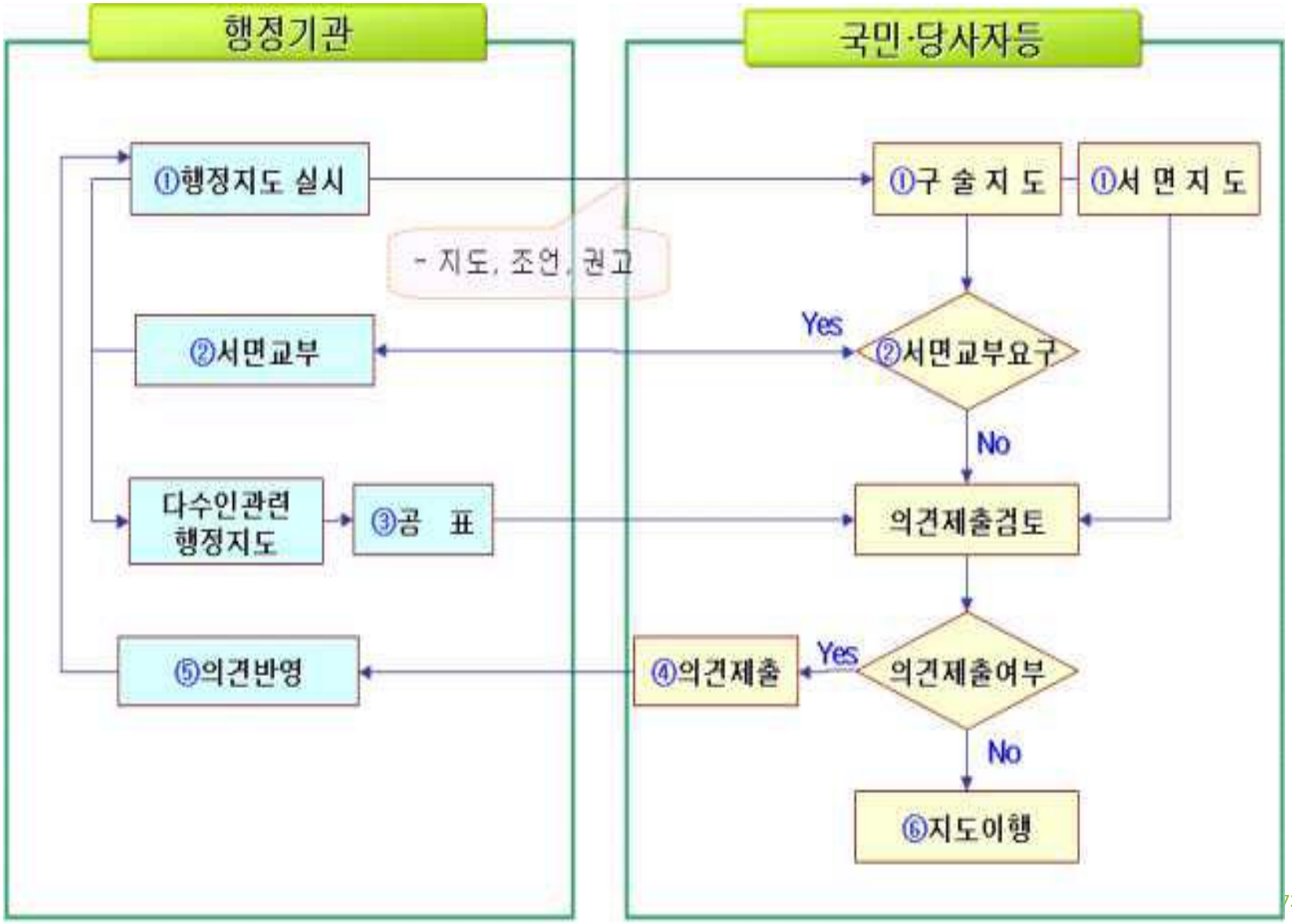
행정기관
국민·당사자등
①행정지도 실시
①구 술 지 도
①서 면 지 도
- 지도, 조언, 권고
②서면교부
Yes
②서면교부요구
No
다수인관련
행정지도
③공 표
의견제출검토
⑤의견반영
④의견제출
Yes
의견제출여부
No
⑥지도이행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제3조).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각급학교,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

- 적용범위(법 제4조)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

✓ 예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및 외국인

✓ 외국인은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인정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행정정보공표의무(법 제7조)

✓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③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그 밖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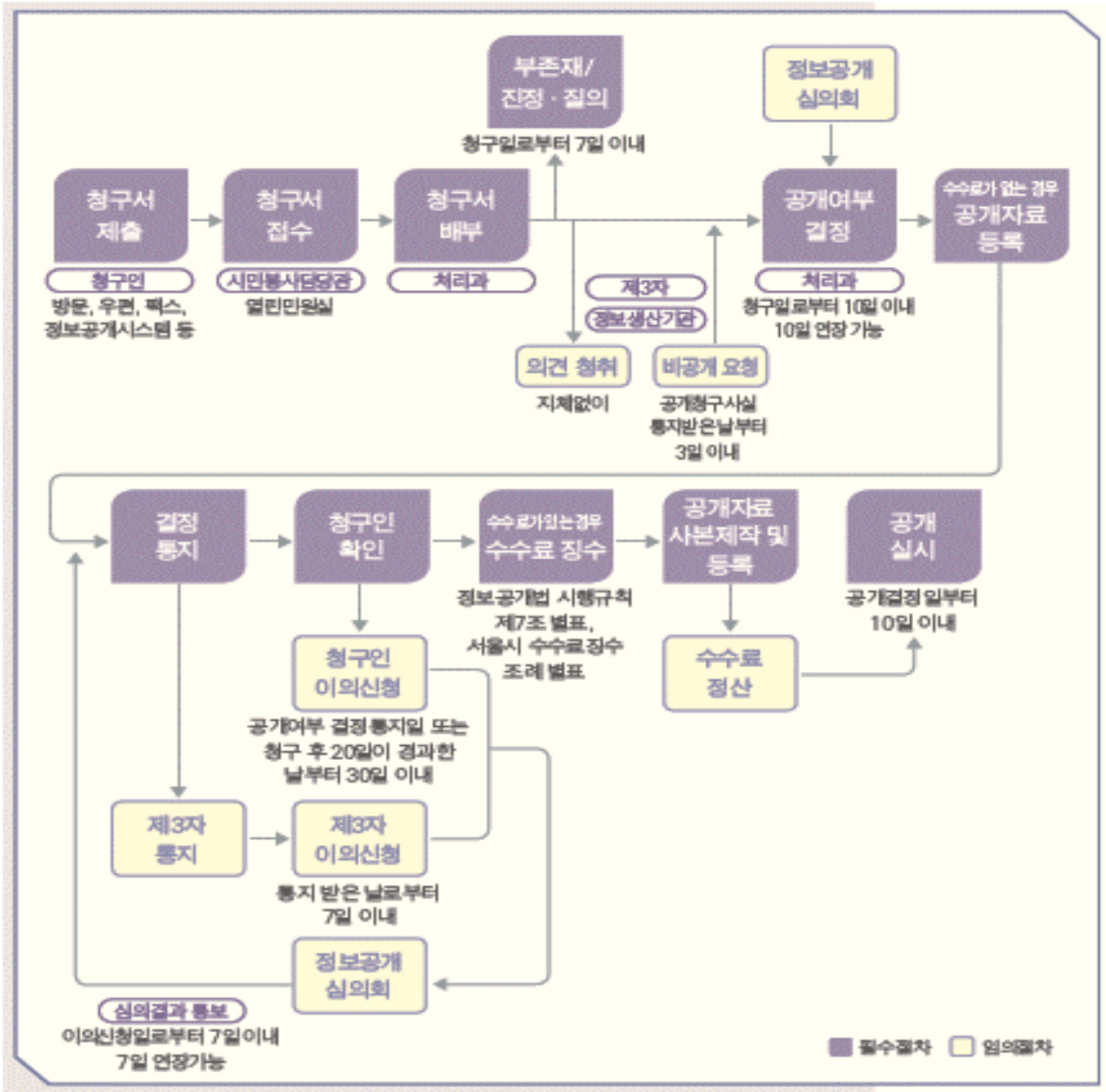
부존재/
진정 · 질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
심의회
청구서
제출
청구서
접수
청구서
배부
공개여부
결정
수수료가 없는 경우
공개자료
등록
청구인
방문, 우편, 팩스,
정보공개시스템 등
시민봉사담당관
열린민원실
처리과
제3자
정보생산기관
처리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의견 청취
지체없이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날부터
3일 이내
결정
통지
청구인
확인
수수료가있는경우
수수료 징수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서울시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
공개자료
사본제작 및
등록
공개
실시
공개결정 일부터
10일 이내
청구인
이의신청
공개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정산
제3자
통지
제3자
이의신청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7일 연장가능
필수절차
임의절차

- 정보공개의 절차

1) 정보공개의 청구(법 제10조)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①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함.

2) 청구의 접수 및 정보공개청구서의 처리(영 제6조)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함.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다만, ①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②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음. 공공기관이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3)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법 제11조, 제13조)

✓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통지를 할 때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함.

✓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4) 정보의 공개(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함.

✓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음.

✓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 ①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②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③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④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여야 함.

5) 비용부담(법 제17조)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함.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 참고) 비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보(법 제9조)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 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쟁송

① 이의신청(법 제18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국가기관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①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② 단순·반복적인 청구, ③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함.

② 행정심판(제19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 정보공개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③ 행정소송(제20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음.
✓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음.

• 비공개요청(제21조)
✓ 정보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함.

- 생존한 자연인에 관한 정보

예외)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거나 유족 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호대상

- 특정 개인에 대한 사실, 판단, 평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특정개인을 알 수 없고, 통계적으로 변환된 정보는 제외(기관의 직원 수, 퇴사율, 평균연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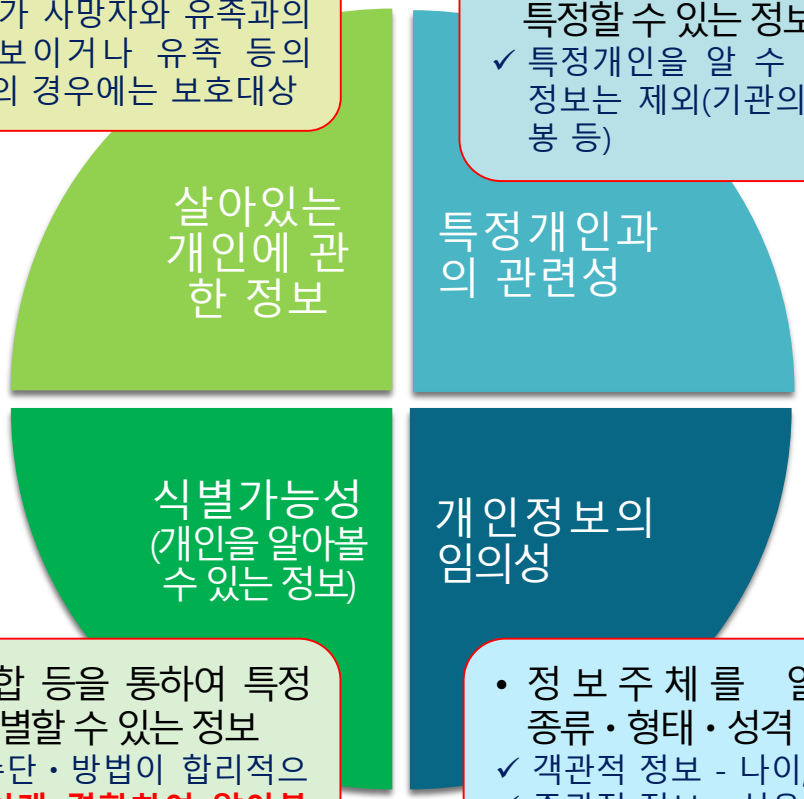

- 특정정보 또는 정보의 결합 등을 통하여 특정 자연인을 다른 자연인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

✓ 각각의 정보를 결합하는 수단·방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함.

-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종류·형태·성격·형식의 정보

✓ 객관적 정보 - 나이, 키, 체중, 주소 등

✓ 주관적 정보 - 신용도평가, 근무평가 등

- 개인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 또는 거짓정보도 포함.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개념

처 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국적이나 신분에 관계 없이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정보주체가 되며, 소비자, 근로자, 환자, 학생, 교사, 군인, 공무원, 피의자, 죄수, 행정조치 대상자 등도 정보주체가 됨.
개인정보 파일	▪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 집합물
개인정보 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 **"업무"**란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 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이해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한 자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사람

영상정보 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장치
  -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네트워크 카메라**

개인 영상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고유 식별정보

-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함.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가운데 **①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②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③ 선고유예의 실효, ④ 집행유예의 취소, ⑤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함(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 " 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

개인정보 수집허용사유 해당성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함.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5.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이용 금지

[예외적 허용사유]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목적 외 이용을 불허함.

별도의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1.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2.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시 게재의무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함.
- 목적 외 이용 허용 사유 가운데 제2호-제6호, 제8호, 제9호에 한함.
- **게재방법)** 관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시작일은 목적외이용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 **게재사항)** ① 목적 외 이용을 한 날짜, ②목적 외 이용의 법적 근거, ③목적 외 이용의 목적, ④ 목적 외 이용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 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 “제3자” 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처리수탁자는 제외함.

개인정보 제공 허용사유에 해당할 것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함.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무

- **[원 칙]**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예 외]**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이 허용됨.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

목적 외 제공 허용사유에 해당할 것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목적 외 이용을 불허함.

별도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연락처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목적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의무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여야 함.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목적 외 제공 시 게재의무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함. (목적 외 제공 허용 사유 가운데 제2호-제6호, 제8호, 제9호에 한함.)
- **게재방법)** 관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시작일은 목적외 제공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 **게재사항)** ① 목적 외 제공을 한 날짜, ②목적 외 제공의 법적 근거, ③목적 외 제공의 목적, ④ 목적 외 제공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란?

-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사유에 해당(5호-9호)하여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허용됨.

민감정보 처리 허용사유

-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1. 민감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란?

-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
-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사유(5호-9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고유식별정보의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예 : 가정폭력방지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의무

-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안전성확보조치 이행 여부를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하고,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공공기관
2.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행정안전부장관에 의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1.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

주민등록번호의 예외적 처리 허용사유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 법률 ·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2017.3.30. 시행)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

주민등록번호 삭제의무

- 주민등록번호의 예외적 처리 허용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2016. 8. 6.까지 삭제할 것.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조치 의무(2016. 1.1.)

-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암호화 적용 시기.

①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7년 1월 1일
②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8년 1월 1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의 예외적 처리 허용사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관련 조항]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처리자
원칙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예외사유	• 본인확인기관 • 법령상 허용하는 경우 • 재판매전기통신사업자	• 법령상 허용하는 경우 • 생명·신체·재산의 위험 있는 경우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체수단	대체수단 제공 의무 있음	대체수단 제공 의무 있음
위반시 제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시기	2012년 8월 18일	2014년 8월 7일
보유주민번호 파기시한	시행일로부터 2년	시행일로부터 2년

개인정보의 파기

파기사유 및 시기

- [파기사유]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 [파기시기 1]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 [파기시기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

파기방법

-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 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

-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는 파쇄 또는 소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 파기사항의 기록 및 관리
  - 공공기관의 경우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할 것
  - 개인정보파기관리대장을 작성할 것
-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함.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

-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
-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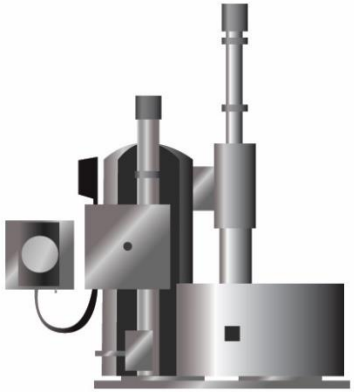

소각, 파쇄 등

디가우저,
로우레벨
포멧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란?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 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함.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 ·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②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사유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금지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금지됨.
- 예외)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안내판설치의무(1)

- 안내판설치장소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
✓건물 내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여야 함.

- 안내판 내용

①설치목적 및 장소
②촬영범위 및 시간
③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④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의 경우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
-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설치계획 수립 및 설치 사유발생

설치필요성검토

- 법령에서 허용
- 범죄예방, 수사
- 시설안전, 예방
- 교통단속
- 교통정보수집·분석·제공

분야별책임자에게 보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사전의견수렴

① 행정예고실시
② 의견청취
③ 설명, 설문조사, 여론조사 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견수렴

① 관계전문가
② 해당시설 종사자, 해당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등이해관계인

설치목적변경에 따른 추가설치 등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조작,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 사용금지

안내판설치

- 설치목적, 장소
- 촬영범위, 시간
- 관리책임자 성명, 직책, 연락처
- 수탁자의 명칭, 연락처